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40
----------	-------

발의연월일 : 2026. 2. 23.

발 의 자 : 김영환 · 정태호 · 안도걸
정일영 · 박상혁 · 허영
박용갑 · 장철민 · 한민수
김성희 · 김태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간 경제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제재만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인지세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

13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과태료)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과태료) ① 제8조제1항 본</u> <u>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u> <u>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에</u> <u>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u> <u>과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u> <u>할 세무서장이 부과 · 징수한다.</u>